

서울고등법원 2020. 6. 16 선고 2019나6426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0. 6. 16 선고 2019나6426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26 선고 2018가합6926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1. B

2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준용

3. D

변론 종결2020. 4. 28.

판결 선고2020. 6. 16.

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8가합6926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각자 375,094,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10. 8.부터 이 사건 2019. 6. 17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,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

- 제4면 제20행의 "분할 전 토지"를 "분할 후 토지"로 고친다.
 - 제7면 제4, 5행의 "다투고 있지 아니하다."를 "아래 3), 4)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C를 고소한 사건들에서 인정하기도 하였다."로 고친다.
 - 제8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- 『5) 원고는, 이 사건 각서는 N의 피고 C에 대한 채무와 무관하게 원고가 피고 C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한 것인데, 피고 C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, 이 사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위 3), 4)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C를 고소한 사건들에서 한 주장, 즉 '원고가 N의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, 당시 피고 C가 N로부터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사실을 모르고 착오로 작성하였다.'는 주장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, 그 밖에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박영재

판사박혜선

판사강경표